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71호
----------	-------

2018. 01. 31.(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1월 09일

○ 회부일자 : 2018년 01월 12일

다. 상정일자 : 2018년 01월 18일

○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현순 여성정책관)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직원 구분을 상위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임용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여 직원 임용·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원 구분 변경(안 제7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

○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 삭제 (안 제10조)

- 상위 법률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임용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조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직원 및 임용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임.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진흥원을 총괄하는 비상임 원장을 두고, 진흥원 산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7조에서는, 직원 구분과 관련해, 기존에는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은 ‘팀원’으로, 행정업무 수행직원은 ‘행정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음.

현행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 포함)으로 구분
개정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 으로 구분

- 이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와 2017년 청소년사업 지침(여성가족부)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구분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센터의 장(센터장)
나. 관리업무 수행직원	관리업무 수행직원 (팀장)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팀원)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행정업무 수행직원 (행정원)

- 안 제10조는, 직원임용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 본 조항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시설·기관의 직원 임용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볼 수 있음.
 - 다만, 본 조항 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에 있어,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을 취업제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및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적시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6.>

- 또한, 상위법령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 재차 같은 법률에 따른 취업 제한을 위한 결격사유 조항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u>으로</u>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직원과 정원)----- ----- <u> 및 행정원으로</u> -----.</p>
<p>제10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제10조 <삭 제></p>

관 련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 고 자 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센터의 장	1)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관리업무 수행 직원	1)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청소년상담사 1급 4)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생활지도 직원(일시 보호시설 근무)	1)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017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11 ~ 312p)

라. 종사자의 자격기준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의 장 (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관리업무 수행직원 (팀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팀 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행정원)	1)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생활지도 직원 (일시보호 시설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는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